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90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7. 19.

3.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관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로 보아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추천·정년연장·징계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항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9호) 및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추가

개정안은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①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무총리가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¹⁾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을 추가하고, ②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님에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추가하는 한편, ③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자에 국무총리와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1) 한정에 의원안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법」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2. 제30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u>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③ <u>해양수산부장관은</u>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경찰공무원법」 제6조의2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u> 5. (현행과 같음) ② ----- <u>국무총리·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u> ----- ----- -----. ③ <u>국무총리·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u>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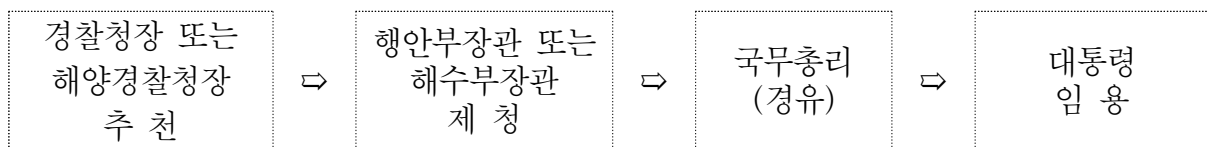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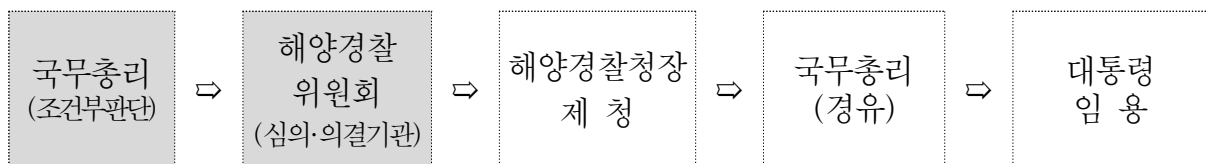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음.²⁾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02009)에서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을 소관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제외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절차도]



[개정안에 따른 총경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절차도]



- 2)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009)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무총리가 해양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해양경찰청은 개정안에 따른 경우 수시로 이루어지는 실무부서장급인 총경 이상의 임용행위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판단에 따라 비상임인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므로 적시성이 저하되어 현장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국무총리에 대한 보고 및 해양경찰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해양경찰위원회 준비 등 과정에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23년 총경 이상 임용 종류별 실시현황]

(단위: 건)

구 분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 해제	강등	면직	해임	소계
치안총감	1	-	-	-	-	-	1	-	2
치안정감	1	1	-	-	-	-	1	-	3
치안감	2	3	-	-	1	-		-	6
경무관	5	7	2	-	-	-	3	-	17
총경	12	131	4	1	2	-	8	-	158
합계	21	142	6	1	3	-	13	-	186

*자료: 해양경찰청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주요 제도 및 정책의 심의·의결이므로 인사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하고, 인사행정의 경우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하므로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 될 여지가 있어 사실상 모든 인사에 대해 심의·의결이 필요하게 되는 점, 인사운영은 비밀보장이 필요한 기관 고유의 업무이며 총경 이상 인사의 경우 상시 소요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사행정의 적시성이 저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수산부의 신중 검토 등 입장 및 타 위원회 소관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5